##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뢰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여러가지 신용업무를 확대발전시키며 국제금융시장의 시세변동에 맞게 기동적인 활동을 벌려 더 많은 외화를 벌어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제13권 중보판 383폐지)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한 깊은 리해 를 가지는것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증권관 련업무를 진행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 제로 된다.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한 리해에서 중 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증권감독관리기구 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이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기초하여 증 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문으로 진행 하는 행정적인 집행기구이다.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는 증권시장 이 국가의 법률, 법규에 기초하여 운영되 는가 하는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업으 로서 증권감독관리관계는 증권관계의 중 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그것은 증권시장에서 사기행위와 내막 거래, 시장조종행위 등 부당한 행위들이 성 행한다면 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이 떨어지 게 되고 증권시장이 붕괴될수 있으며 나 아가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각국에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으 며 그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고있다.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를 보면 주로 자률성관리제도와 집중 형관리제도로 구분할수 있다.

자률성관리제도는 유관립법을 제외하고 정부가 증권시장에 비교적 적게 간섭하며 증권시장에 대한 관리는 주로 증권거래소 와 증권상협회 등의 조직들에 의하여 진 행되는것이다. 자률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집중형관리제도는 정부가 전문적으로 제정한 증권시장관리규범을 통하여 국가적인 증권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전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관리를 실현하는것이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와 관련하여 집중형관리제도를 실시하고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다. 집중형관리제도를 실시하고있는 나라들에서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시장에 대한 국가적인 감독관리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일련의 특성을 띤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우선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감독관 리기구이다.

증권시장이 전문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증권시장에서 증권업에 종사하는자들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하는자들도 증권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증권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가 자기 사명을 다할수 없다. 이것은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구로 되게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또한 행정관리기구 이다.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진행하는 증권감독 관리행위는 국가가 진행하는 행정적간섭 행위를 대표하며 그것은 국가권력으로서 위 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가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증권 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또한 법집행기구이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법의 법집행기 구로서 행정기관의 법집행권을 행사하며 증 권위법사건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조사하 고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 다 른 한편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직권은 법률 이 부여하며 법률, 법규가 부여한 권한을 초

오늘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거래의 폭과 규모는 날을 따라 증대되고있다. 많은 유휴자금이 증권시장에 몰려들어 투기의 수단으로, 치부와 자본증식을 위한 수단으로리용되고있다.

월하여 행사할수 없다.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자본이 직접 생산경영활동에 투자되는것이 아니라 그가 투자한 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의해 생산경영활동에 투자되게 된다. 투자가는 증권이라는 가상적인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그에 따르는 리익배당금이나 리자를 받으며 증권을 발행한 기업은 증권발행으로 모은 투자가들의 자본을 생산경영활동에 투입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가들이 기업경영의 직접적담당자로 되지 않으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된다.

물론 증권투자가들중 소수 투자가들은 기업의 경영권장악을 목적으로 투자하여 기 업경영자로 된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 대 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같은 분야에 종 사하는 기업들의 수준과 실태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파악하며 조직자적능력을 구비 하는 등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경영권장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가들을 제외한 기타 투자가들로서는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고도 리익배당금이나 리자라는 리윤을 얻게 된다.

이것은 증권투자가 경영자로서의 자질 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자들도 투자를 통 해 수익을 볼수 있게 하는 투자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한 리해에서 중 요한것은 다음으로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직 권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다.

각국 증권법에서는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그 존재사명으로부터 일련의 직권을 부여 하고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일 정한 차이를 가진다.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증권 및 기타 사무감찰위원회》(간단히 《증감회》)는 《증권 및 기타 사무감찰위원회조례》(간단히 《증감회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정감독 관리기구이다. 증감회는 정부부문이 아니지만 각종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하여 정부 앞에 책임을 진다. 그의 주요직권은 감독 관리권이다. 증감회는 조사권과 처벌권은 없고 단지 정부의 해당 부문에 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줄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을뿐이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에 증권감독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련한 권한들을 부여하고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법에 따라 증권시장감독관리와 관련한 규정, 규칙들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법에 따라 증권발행인, 상사회사, 증권 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기결산기구, 증권 투자기금관리기구, 증권투자자문기구, 신 용등급평가기구, 증권업에 종사하는 변호 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의 증권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 한다.

법에 따라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성원들의 자격기준과 행위준칙을 제정하고 감독하다.

법에 따라 증권발행 및 거래와 관련한 정보공개정형을 감독한다.

법에 따라 증권업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한다.

법에 따라 증권시장감독관리법률, 행정법

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한다.

중국 증권법에서는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자기의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는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가 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권한, 조사받 는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성원들에 대하 여 조사하고 그들에게 조사받는 사건과 관 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것을 요구할 권 한, 조사받는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 들의 증권거래등록, 등기이전기록, 재정회 계자료, 기타 관련문건 및 자료를 검열, 복 제하며 필요한 경우 문건과 자료들을 봉 인하여 보관할 권한, 조사받는 사건과 관 련된 단위 및 개인의 자금구좌, 증권구좌 를 조사하고 위법적으로 이전 혹은 은폐 시킨 자금, 증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동 결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있다.

이로부터 각국 증권법에서는 증권감독 관리기구 성원들의 행위준칙에 대하여 빠 짐없이 규정하고있다.

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한 리해에서 중 요한것은 다음으로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 에 대해서도 깊은 파악을 가지는것이다.

최근 각국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제립법은 두가지 추세를 보이고있다. 그 하나는 금융감독관리의 중심이 증권시장에로 돌려지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지구적범위에서 일어나는 금융일체화가 금융감독관리 특히 증권감독관리의 국제화를 추동하고있는것이다.

그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가 국제적인 증 권감독관리기구인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 의 출현이다.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략칭 IOSCO)는 본 부를 카나다의 몬트리올시에 두고있다. 이 국제기구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1983 년에 창설되였다. 이 국제기구는 지역별위 원회를 두고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를 두고있다.

이 기구의 조직목적은 네가지이다.

첫째로, 증권감독관리분야에서 성원국호 상간에 합작을 강화하여 국내적범위는 물 론 국제적범위에서도 증권시장에 대한 감 독관리를 보장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평 과 효률을 유지하게 하는것이다.

둘째로, 기구성원국호상간에 증권관련정 보를 교환하며 각 성원국의 증권시장의 발 전을 촉진하는것이다.

셋째로, 공동의 노력으로 국제증권거래의 기준과 효과적인 감독관리체계를 만들어내는것이다.

넷째로, 호상협조하여 유판기준을 엄격 히 집행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함으로 써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다.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최근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는 국제회계기준, 결산, 다국증권, 선물계약사기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금융집단에 대한 감독관리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련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1998년 2월 11일부터 14일사이에 인디아에서는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 및 그 집행회의가 진행되였는데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증권감독관리기구 책임자들이 참가하여 동남아금융위기에 대해 심각히 토론하고 아시아래평양지역 증권시장의 최신발전 및 시장감독관리 등의 내용에 대하여 광범히 토론하였다.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가 채택한 문건들 중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 는것은 《증권감독관리의 목표와 원칙》 이다.

국제증권감독관리기구가 18개월의 준비를 거쳐 1998년 9월에 통과시킨 이 문건에서는 투자가보호, 시장의 공정성 및 유효성 보장, 체계적인 위험의 감소를 증권감독관리의 목표로 내세우고 감독관리기구자체가 준수해야 할 원칙, 《자률》의 원

칙, 발행인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투자조합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시장중개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2급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등 증권감독관리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현재 이 문

전은 증권감독관리분야에서 국제적인 증 권감독관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의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 제증권감독관리기구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 지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증권관련업무활 동을 주동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